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15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3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2022 계획	32,139	6,305	100	25,734
2022 결산	32,970	929	49	31,992

나.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25,639백만원에서 31,992백만원으로 6,353백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499백만원에서 1,439백만원으로 940백만원 증가하였음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를 당초 22,760백만원에서 30,053백만원으로 7,293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분(항·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26,137,675	33,431,015	7,293,340
216 이자수입	498,513	1,438,766	940,253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498,513	1,438,766	940,253
714 예치금회수	25,639,162	31,992,249	6,353,087
714-01 예치금회수	25,639,162	31,992,249	6,353,087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분(정책·단위·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율)
합 계	26,137,675	33,431,015	7,293,340 (27.9%)
남북교류협력 추진 (비융자성사업비)	3,278,000	3,278,000	-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3,278,000	3,278,000	-
남북교류협력사업	3,278,000	3,278,000	-
재무활동	22,759,675	30,053,015	7,293,340 (32%)
보전지출	22,759,675	30,053,015	7,293,340
여유자금 예치(예치금)	22,759,675	30,053,015	7,293,340
행정운영경비	100,000	100,000	-
기본경비	100,000	100,000	-
기금 관리비	100,000	100,000	-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63억 5,300만원)와 **이자수입**(9억 4,000만원)에 각각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72억 9,300만원)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1]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남북협력과)**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2%, 72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 됨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 7), p.296

〈표 3-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초 (A)	기금운용계획변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D=C/A)
지출합계	**26,137**	**33,431**	**7,293**	**27.9**
남북교류협력추진	3,278	3,278	-	-
재무활동 (행정국 남북협력과)	22,759	30,053	7,293	32.0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	22,759	30,053	7,293	32.0
여유자금예치	22,759	30,053	7,293	32.0
행정운영경비 (행정국 남북협력과)	100	100	-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②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지 운용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3]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